#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자료

#### □ 해양보호구역이란?

• 바다(해양) 중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연안습지(갯벌) 보호지역 (습지보전법) 및 해양보호구역(해양생태계법)으로 지정된 곳을 통칭

해양보호구역

#### 해양보호구역

- ① 해양생태계보호구역
- ② 해양생물보호구역
- ③ 해양경관보호구역 (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)

**습지보호지역** (습지보전법)

+

### □ 지정 절차(습지보전법 제8조)

- 이 (지정권자) 해수부 장관, 시도지사
- (지정대상)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,
   특이한 지질학적 가치 등을 지녀 특별히 보전 가치 있는 해역을 지정
- (지정절차) 시·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확정·고시
- □ **행위제한**(습지보전법 제13조)

| 제한 행위  | 행위제한 적용제외  | 해양수산부 장관   |
|--|--|--|
| → 건축물, 인공 구조물의 신축·증축 및<br>토지의 형질변경<br>* 증축은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<br>→ 습지의 수위, 수량 증가, 수량 감소행위<br>→ 흙모래·자갈 또는 돌 등 채취, 광물채굴<br>→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·포획·<br>채취하는 행위(해당 지역 주민이<br>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<br>전까지의 기간) 이상 생계수단 또는<br>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<br>경작·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는 행위<br>제한 적용 배제) | <ul> <li>「농어촌정비법」제2조 제6호에<br/>따른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유자<br/>관리 및 농업목적 사용</li> <li>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<br/>제37조의 응급조치</li> <li>「하천법」의 홍수예방을 위한<br/>하천 공사 및 유지·보수 사업</li> <li>군병력 투입 등 군사목적으로<br/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li> </ul> | 승인 시 적용 제외  →「자연재해대책법」자연재해 예방·복구·구호 등 활동 →습지보호지역 보전 또는 농림수산업 영위에 필요한 경우  →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★ 군작전 대규모 국책사업 인명· 재산피해 방지 |

### □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(안)

ㅇ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조사(23.7.~8./해양환경공단)

#### <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>

- 1) 대형저서동물: 법정보호종(갯게, 흰발농게, 대추귀고등 등) 서식
- 2) 해안식생분포 면적: 0.62km² (기준치 0.01km² 이상)
- 3) 물새류: 해양보호생물(검은머리갈매기, 알락꼬리마도요, 저어새, 노랑부리백로) 서식
  - ☞ 법정보호종(대형저서동물, 물새류), 해안식생 서식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 충족
- ㅇ (지정위치) 경상남도 사천시 광포만 주변지역 갯벌
- (지정면적) 약 3.46km²
- (지정목적) 넓은 염생식물 군락 및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사천 광포만 갯벌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
- (생태계 현황)
  - (대형저서동물) 해양보호생물 갯게(2,480개체 이상), 흰발농게(330,344개체 이상), 대추귀고둥(74,600개체 이상) 등 서식



**흰발농게** 33.7개체/m² 분포면적 9,800m² 총 330,334개체 서식 추정



**갯게(국내 최대개체수)** 2개체/m<sup>2</sup> 분포면적 1,240m<sup>2</sup> 총 2,480개체 서식 추정



대추귀고등(국내 최대개체수) 6.91개체/m<sup>2</sup> 분포면적 10,700m<sup>2</sup> 총 74,600개체 서식 추정

- (바닷새) 법적보호종 검은머리갈매기(멸종위기 2급, 해양보호생물), 알락꼬리마도요(멸종위기 2급, 해양보호생물), 저어새(멸종위기 1급, 해양보호생물), 노랑부리백로(멸종위기 1급, 해양보호생물) 서식



검은머리갈매기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2급



**알락꼬리마도요**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2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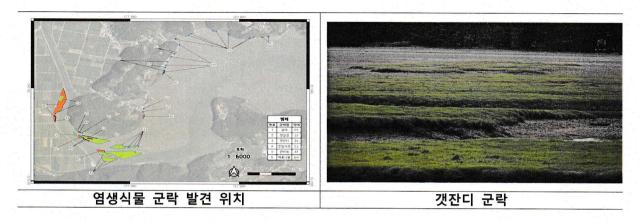


**노랑부리백로**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1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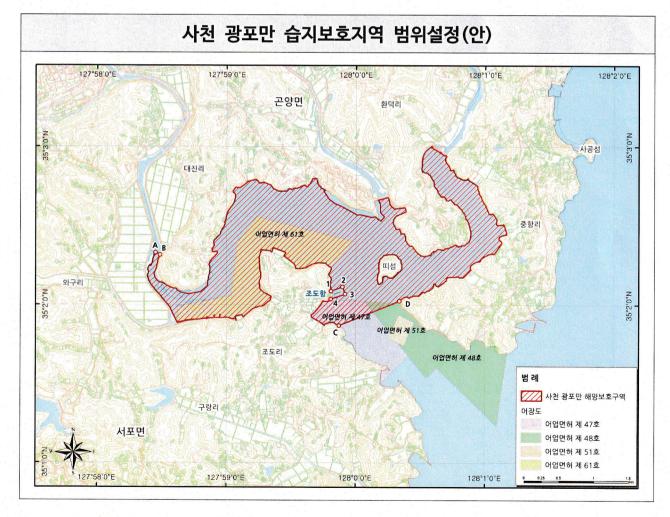


**저어새**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1급

- (염생식물) 갯잔디 군락 총 62,264㎡로 국내 최대 면적 분포, 습지 보호지역 지정기준(0.01㎢ 이상) 부합



- (지정범위) '23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해양생태계 조사 정점 범위를 포함하여 보호지역 범위 지정
  - \* (습지보호지역 내 행정구역) 곤양면, 서포면 총 2개면



\* 습지보호지역 대상지 내 국가 어항(조도항: 0.12km) 구역 제외

### □ 보전·이용방안

- (보전계획)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수립·시행(지방청)
- (조사·관찰) 습지보호지역과 인근 해역의 생물 서식지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(해양환경공단)
- o (환경개선) 불법행위 감시, 갯벌복원, 해양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(지자체)
- (이용기반) 지속적 습지보전을 위한 습지보전·이용 시설 설치·운영(지자체)
- (주민지원) 교육 및 인식증진, 치어·종패 방류,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(지자체)
- (생태관광) 방문객센터, 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습지생태관광 활성화 도모(지자체)
- (**일자리 창출**)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, 갯벌생태해설사 등 위촉(지자체)
  - \* 해양보호구역(습지보호지역 포함) 보전·관리 지도·계몽 활동, 불법행위 감시 등

#### □ 향후계획

- ㅇ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계부처 의견 조회(9~11월)
-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·고시(12월 말)

# 참고 1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

| 지정항목              | 세부기준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지형·지질 및 경관<br>특이성 | ① 지형·지질이 매우 전형적이거나 특이하며 학술적·미적 가치가 매우<br>뛰어나며, <u>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</u> 되는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② <u>훼손되지 않은 해안사구와 연안습지의 연속성이 잘 보존</u> 되어 있거나<br>연안습지의 배후에 해안절벽과 시스택 등 <u>원시적인 해안 경관</u> 이<br>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 |  |
|                   | ③ 자연 및 인문 경관의 미적 가치가 뛰어나 사람들에게 심미적인 즐거움과<br>여가활동을 통한 <u>정서 고양과 복지 증진에 충분히 기여</u> 할 수 있다고<br>판단되는 지역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① 단위갯벌에서 <b>출현종수가 100종을 넘거나 법적보호종이 출현</b> 하는 지역   |  |
| 대형저서동물            | ② <u>국내에서만 출현하는 종, 희귀종 혹은 생태적 중요도가 높은</u> 것으로<br>알려진 종이 <u>집단으로 서식</u> 하는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③ 종다양도 등 <u>지수생태</u> 가 다른 단위갯벌에 비해 <u>월등히 높다고 판단</u><br>되는 지역   |  |
| 해안식생 및 식물상        | ① 법적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  |  |
|                   | ② <mark>해안식생의 분포 면적이 0.01km² 이상</mark> 이거나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<br>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③ 「자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작성한 <u>녹지</u><br><u>자연도에서 10등급(사구식생, 염소지식생)에 해당하는 지역</u> 중 보전<br>상태가 양호한 지역 |  |
|                   | ① 법적보호종의 서식처 또는 도래지로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 |  |
| 물새류               | ② 2만 개체 이상의 물새가 출현하는 지역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③ 물새 한 종의 전 세계 개체수의 1% 이상이 서식하거나 이용하는 지역  |  |
| 기타분류군             | ① 위 분야 외의 어류나 양서류, 파충류, 포유류 중 <u>법적보호종이 서식</u><br><u>하거나 출현</u> 하며 해당생물의 생활사에 해당 연안습지가 중요한 역할을<br>하는 지역     |  |

# 참고 2

##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절차(안)

◆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적합성 확인 추처 사전 ◆ 지자체 지정 요청 준비 단계 ◆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부합 대상지역 정밀조사 여부 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 (필요시 별도조사) \* 기존 조사자료 활용 가능 지정계획(안) 마련 ◆ 해양수산부(시·도지사) 지정 ◆ 경남도, 사천시 의견수렴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준비 의견수렴 ◆ 주민설명회 개최 단계 • 환경부, 국방부, 국토부 등 관련 관계 중앙부처 협의 중앙행정기관 습지보호지역 ◆ 해수부 장관 방침 및 관보 게재 지정·고시 지정 ◆ 해수부\*, 관련 지자체 누리집 게시 관련 정보시스템 게시 \* 해양환경정보포털

